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이후 유아의 보호자가 지원 대상 여부 및 내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단축(30일→10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안 제4조제4항)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 ~ ③ (생략)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유아가 다니는 영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장 및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가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비용 지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 ----- ----- -----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 ----- -----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유아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203-6444